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. 5. 12 선고 2016가단24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4. 28.

판결 선고 2016. 5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76. 3. 11. 접수 제29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강진우

별지